

# 일미간 통신협상 결과와 시사점

## Japan-U.S.A. Telecommunications Negotiations and Their Implication

김방룡(P.R. Kim)

공정경쟁연구팀 책임연구원, 팀장

미국은 WTO 기본통신협상을 통하여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두었으며, 최근에는 실질적인 시장개방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제 외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일미간의 강화발의안(Enhanced Initiative)」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본에 대한 통신접속료 수준의 인하 요구이다. 본 고에서는 1998년 5월에 시작되어 2000년 7월에 결착을 보기까지 3차에 걸쳐 일미간에 전개된 통신협상 전개과정을 개관한 후, 「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일미간의 강화발의안에 대한 제3차 공동현황보고서」 내용 중 통신분야, 특히 상호접속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통신정책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 I. 문제의 발단과 전개

일본에서는 접속료를 통신서비스 도매요금으로 간주하고, 우정성이 산정 인가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지정전기통신설비(NTT 동일본 및 NTT 서일본의 전기통신설비)의 접속요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2의 규정에 의거, 망의 관리운영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에 기초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다. 현행의 접속요금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접속사업자로부터 요금인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1].

<표 1>은 실제로 일본의 접속요금 수준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접속료가 가장 낮으며, 미국도 상당히 저렴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이미 WTO 기본통신협상을 통하여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두었으며, 최근에는 실질적인 시장개방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제 외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일

미간의 강화발의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본에 대한 통신접속료 수준의 인하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 정부는 일본에 대하여 접속요금 설정에 장기증분비용(Long Run Incremental Costs: LRIC) 방식을 도입하도록 강요하였다.

LRIC 방식이란 사업자의 망 비용을 실제 비용발생액(historical cost)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가입자 수 규모와 통화량에 대한 처리능력을 갖춘 망을 현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율적인 설비와 기술로 새로 구축할 경우의 비용(forward looking cost)에 기초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경쟁원리가 작용되지 않는 병목설비의 사용료 산정에 유용한 것으로 신규 진입할 경우 얼마만큼의 코스트로 진입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기 위한 계산방식이다. 산정 모형으로는 설비를 모두 신규 취득했다고 가정하는 Bottom-up 모형과 기존의 설비를 재평가하여 감가상각 등을 가미시키는 Top-down 모형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최근 들어 미국의 Hatfield 모형에서는 지금까지 주장하여온 “green field” 가정을 포기하고 기존 사업

<표 1> 접속요금의 수준 비교

(3분통화 기준요금, 2000년 1월 1일 현재)

	일본(NTT 동서)		미국 (벨 에틀란틱·뉴욕)	영국 (BT)	프랑스 (FT)	독일 (DT)
	현행요금	장기증분 (모형 C)				
단국교환기접속	5.57엔	4.50엔	4.99엔(4.20센트)	2.27엔(1.18펜스)	3.26엔(16.53상팀)	3.39엔(5.13페니히)
중계교환기접속	10.64엔	4.78엔	6.56엔(5.53센트)	3.31엔(1.72펜스)	6.39엔(32.40상팀)	7.32엔(11.07페니히)

1) 미국은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름. 미국의 경우, 회선당 월액 요금을 분단위로 환산한 것으로 접속통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거리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금임  
 2) 독일의 중계교환기접속의 요금은 50~200km의 시외통화의 요금  
 3) 환율은 1\$=118.74엔, 1£=192.38엔, 1프랑=19.72엔, 1마르크=66.14엔으로 환산(1999년 상반기 평균: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August 1999.」)  
 <자료>: □□ □□□

자의 wire center 위치를 인정하는 “scortched node” 가정을 받아들이는 등 기존사업자의 투자비용 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원가는 상당 부분이 원가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

본 장에서는 1998년 5월에 시작되어 2000년 7월에 결착을 보기까지 3회에 걸쳐 발표된 「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일미간의 강화발의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과 미국간의 통신협상 전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과 미국의 양 정부는 1998년 5월 15일, 「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일미간의 강화발의안에 관한 제1차 공동현황보고서(First Joint Report)」 B.1.(3)에 따라 LRIC 방식에 기초를 둔 접속요금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3].

당시 일본 교섭대표로는 하라구찌(□□) 외무성의 관, 다니(谷) 전기통신국장이었으며 미국의 교섭대표로는 피셔 USTR 차석대표였다[4].

상호접속료 협상과 관련하여 교섭 개시 시부터 일미간에는 참여한 대립을 보여왔다. 일본측에서는 「2000년 안에 LRIC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2000년 봄에 법안을 제출」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① 2000년 4월, LRIC 도입을 조건으로 2000년 초 법안 제출, ② LRIC 도입 전에도 접속료 대폭인하」로 정리할 수 있다.

당시 최종적으로 결정된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이 하와 같다. 「① 가능한 한 조기에 LRIC를 도입할 수

있도록 2000년 봄에 소요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② 법안성립 이후, 모든 절차가 조속히 완료된다면 2000년 내에 도입 가능하게 함. ③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요금, 사업경영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절히 배려함. ④ 도입 전에도 현행 제도하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접속료 인하를 추진함. ⑤ 미국도 일본과 같은 시기에 주간(□間)통신에 LRIC를 도입할 것과 그 절차에 투명성을 기할 것.」 상호 접속료 협상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다섯번째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측이 일본측에 요구한 사항이 많이 관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주내(□內)전화의 접속료에 대해서만 장기증분비용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제도의 도입이 지역전화회사의 경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거리전화접속료(주간접속요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비용모형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급격한 접속요금의 저하는 지역전화회사의 경영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highly disruptive to business operations)」는 등의 이유로 장기증분비용방식의 도입은 2001년 이후의 검토과제로 삼고 있다.

2. 1999년 5월 3일, 미국과 일본 정부는 「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일미간 강화발의안에 대한 제2차 공동현황보고서(Second Joint Report)」를 발표하였다[5]. 제2차 공동보고서에서는 양 정부가 제1차 보고서에서의 합의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규제완화 노력을 하기로 재확인하였다. 그 이후로 양 정부

는 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고위급 회담과 각종 전문가그룹 회담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쌍방향 대화의 원칙과 가시적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맞추어 양측은 광범위한 견해와 관심을 교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 정부는 1999년 10월, 상호 의견을 개선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때 후술하게 될 일본 우정성이 1999년 7월에 발표한 「LRIC 모형연구회 보고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6]. 일본 정부도 일련의 규제완화 조치를 취해 왔으며, 최근의 가장 중요한 조치는 2000년 3월 31일, 일본의 규제완화 촉진을 위한 3개년 프로그램의 최종 수정이었다.

3. 2000년 7월 22일, 미국과 일본 정부는 「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일미간 강화발의안에 대한 제3차 공동현황보고서(Third Joint Report)」를 발표하였다[7]. 여기에서도 규제완화를 더욱 촉진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하였으며, 어느 한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양 정부는 본 보고서에 기재된 조치를 다루기 위하여 상호 편리한 시간에 회합을 갖기로 하였다. 이하의 장에서는 제3차 공동현황보고서 내용 중 통신분야, 특히 상호접속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통신정책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기로 한다.

## II. 일본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

제3차 공동현황보고서에 나타난 일본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를 통신망 상호접속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하와 같다.

### 1. 접속료 인하

#### 가. 접속료 인하를 위한 세 가지 모형

과거 미국은 USTR의 미일 제1, 2차 공동보고서(Joint Status Report)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속료수준의 인하와 접속료산정의 투명성을 요구하여 왔다. 미국 당국은 1999년 7월 말 일본 우정성이 발표한 「LRIC 모형연구회 보고서」에 대해서 “본 보고서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접속료 수준은 미국에 비하여 3~4배 높은 수준이어서 일미 양국간 합의에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자상거래 보급의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값비싼 일본 국내 통신비용 인하를 위해 미국 정부는 일본 우정성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개선요구를 전달하였다[8, 9].

미국 정부는 「NTT가 제출한 NTT의 Top-down 모형을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사용했다는 점, 데이터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점, 본래는 시내교환기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비용까지 시내교환비용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모형에서 사용한 내용년수는 유효한 경제적 내용년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기준의 대폭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에는 주간접속요금(access charge)과 시내상호접속요금(interconnection charge) 두 가지가 있는데,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주간접속요금보다 훨씬 낮은 시내상호접속요금만을 일본의 상호접속요금과 비교함으로써 일본의 상호접속요금에 매우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미국의 접속료 수입의 97%를 차지하는 주간접속료와 자국의 접속요금수준을 비교해야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미국의 접속료 인하요구를 완화시켰다.

우정성으로부터 LRIC 방식에 대해 자문을 받은 전기통신심의회는 최종적으로 「① NTT의 경영 ② 일반 이용자 요금에 미치는 영향 ③ 보편적 서비스의 확보」를 감안하여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Model A는 현행 제도를 전제한 모형이며, Model B는 원격수용장치(Remote Terminal: RT)를 가입자 회선에 귀속시킨 모형이다. 즉, Model A에서 시내교환(단국)비용에 산입되어 있는 원격수용장치비용을 가입자회선으로 배분하면 Model B가 된다. 이 경우, 단국비용이 하락하는 한편 가입자회선비용은 상승한다. Model C는 Model A의 개조된 형태를 띠고 있는데, Model A가 1997년 데이터를 사용한 것인데 반하여, Model C는 1998년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다. Model A, B, C를 쉽게 비교하기 위하여 이를 도표화하면 <표 2>와 같다.



<표 5> 우정성의 산정방법에 따른 접속요금

(단위: 엔/3분)

		1998	1999(기준요금)	2000	2001	2002
단국교환기 접속	요금	5.81엔	5.57엔	4.96엔(-14.6%)	4.62엔(-20.5%)	4.50엔(-22.5%)
	진척률	-	-	45%[57%]	25%[32%]	8%[11%]
				70%[89%]		
중계교환기 접속	요금	11.98엔	10.64엔	7.66엔(-36.1%)	5.90엔(-50.8%)	4.78엔(-60.1%)
	진척률	-	-	49%[51%]	29%[30%]	18%[19%]
				78%[89%]		

- 1) ( )는 1998년도 접속요금에 대한 인하율
  - 2) 진척률은 1999년도 통화량 기반의 모형요금에 대한 현행요금으로부터의 진척률
  - 3) [ ]는 1998년도 통화량 기반의 모형요금에 대한 현행요금으로부터의 진척률
  - 4) 2000년도, 2001년도의 요금수준은 1999년도 통화량이 미확정이기 때문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 <자료>: 東□□□□□□□□□□ □□□□□□□□, □□□□□□□□, 2000. 8., p. 8.

Model A와 비교하면 Model B는 RT의 귀속에 따라 단국 접속일 경우의 비용이 3분 기준, 약 24% 인하되는 한편, 가입자회선비용은 월 300엔 이상 인상된다. 이 결과는 RT 비용을 가입자회선에 귀속시켰을 경우에는 기본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서 교환설비로 분류되어 있는 RT를 가입자측 설비에 포함시킴으로써 접속료에서 RT 비용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일본측에서는 이 경우 기본요금이 월 300엔 정도 인상되어 국민들의 저항을 초래할 것이므로 미국의 주장(모형 B)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였다.

나. 상호접속료와 관련한 우정성의 규제완화 조치

1) Model C를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

우정성은 “Model C(1998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GC 접속에 22.5% 인하, ZC 접속에 60.1% 인하)”를 바탕으로 한 상호접속요금 인하가 3년간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되도록 법령을 수정하기로 하였다[11].

2) 최초 2년간에 걸쳐 요금인하 목표의 대부분을 달성

①과 관련하여 우정성은 NTT 동일본과 NTT 서일본이 “1999 회계년도의 통화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첫 2년 이내에 ZC 교환과 GC-ZC 전송에 대해 80%, GC 교환과 다른 기능들에 대해 70%의 인하를 먼저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환영한다. 이러한 계획이 실행

에 옮겨진다면, 1998 회계년도 요금에 비하여 GC 요금은 2001 회계년도까지 약 20%가 인하되고 ZC 요금은 2001 회계년도까지 약 50%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5> 참조).

3) 2000년도 접속요금의 소급적용

우정성은 NTT 동일본과 NTT 서일본이 2000년 4월 1일로 소급하여 2000 회계년도 상호접속요금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환영한다.

4) Model C의 2년 후 개선

Model C에 대해 우정성은 내용년수, 입력치(기기가격, 통화량), 가입자회선비용 등에 관하여 2000년 8월부터 모형 수정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여 2002년까지 완료되도록 할 것이다. 우정성은 2002년에 2001 회계년도의 통화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정된 LRIC 모형을 가지고 세분화된 가입자회선(Local Loop Unbundling: LLU) 가격결정과 추가적인 상호접속요금 인하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2002년 4월 1일로 소급 적용의 가능성과 함께 결정할 것이다.

5) NTS 비용회수 검토

우정성은 통화량에 민감하지 않은 NTS(Non Traffic Sensitive) 비용을 종량제 접속료로 회수할 것인지 가입자회선비용으로 취급하여 정액제로 회수할 것인지 여부를 2000년 가을부터 검토 개시하여 2002년에 결론 짓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정성은 수정

된 LRIC 모형이 (i) 보편적 서비스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도록, (ii) NTT 동일본과 NTT 서일본의 사업 경영에 파괴적이지 않도록, 그리고 (iii) 사용량 기준 상호접속요금에서 최종이용자의 정액요금으로 제도를 변경시키는데 대해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조치 이외에도 우정성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렸다.

- ① 1998년 5월 15일, 「일미 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미일간 강화발의안에 대한 제1차 공동현황보고서」 B.1(3)에 따라, (i) LRIC 기준 요금을 도입하기 전에 우정성은 NTT 지역망의 상호접속요금 인하를 추진하였다. 1998 회계년도 중에는 총 1,770억 엔을 삭감하였으며, 2000년 2월 25일에는 1999 회계년도의 상호접속요금의 추가인하를 승인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 최대 규모의 인하율이다. 아날로그 교환 통화요금에 대하여 4.1%(GC 접속, 3분간), 11.2%(ZC 접속, 3분간), ISDN 통화요금에 대하여 27.5%(ZC 접속, 3분간), 32.6%(GC 접속, 3분간), 그리고 전용회선요금에 대하여 46.7%(MA 내에서 1.5Mbps)를 각각 인하하였다. (ii) 일본 정부는 2000년 3월 31일, 정기국회 회기에 전기통신사업법 수정법안을 제출하여 2000년 5월 12일 통과시켰다.
- ② 우정성은 2000 회계년도 중에 NTT 도코모와 기타 통신사업자간의 상호접속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상호접속방식을 검토할 것이다. 우정성은 2000 회계년도 상호접속체제 검토과정에서 NTT 도코모를 “지정통신사업자”로 분류할 지의 여부도 결정하게 된다.
- ③ LRIC 모형을 검토하는 연구 그룹은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통신사업자의 광범위한 참여와 공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활용하는 등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중립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 ④ 일본 정부는 2002년 10월까지의 수정된 LRIC 모형의 적시 적용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견을 교

환할 것이다.

## 2. 세분화(Unbundling)

가. 우정성은 인터넷 서비스에서의 경쟁을 비롯한 지역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NTT 동일본과 서일본의 통신빌딩에 있는 주배선반(MDF)과 I-인터페이스 가입자 모듈(ISM)을 표준 상호접속점으로 지정하여, 상호접속요금과 상호접속에 관한 기술적 조건을 「상호접속에 관한 협정조항」에 포함시켜 그 법령을 2000년에 수정할 것이다.

나. 디지털 가입자회선(DSL) 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정성 연구 그룹은 2000년 7월 7일에 NTT 동일본과 서일본으로 하여금 전국적 상호접속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실험 영역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이 연구 그룹은 경쟁업체들이 DSL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NTT 동일본과 NTT 서일본이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권고하였다.

다. 우정성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광섬유의 세분화를 위해 요구되는 규정 제정에 관한 문제를 2000년 가을에 연구를 시작하여 2001년 여름에 완료할 것이다.

## 3. 병설(Co-location)

가. 우정성은 NTT 동일본과 서일본의 병설요금을 시장가치 기준에서 장부가치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그 법령을 수정하고 새로운 요금을 2000년 2월 25일 승인하였다.

통신용 건물의 제공요금에 대해서 NTT 동일본과 서일본은 관료와는 달리, 통신용 건물에는 관련 시세라고 하는 시장가격이 존재하고 있으며, 시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액이 생겼을 경우 세무상의 과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부가치가 아닌 시장가격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접속사업자들은 이에 대해서 접속사업자는 관료에서와 같이 접속사업자와 지정전기통신설비설치사업자 사이의 동등성(equal

footing)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접속약관 「요금표 제3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정성 접속료산정에 관한 연구회도 접속사업자들의 견해에 찬동하고 있다. 장부가격기준에 의한 요금공표는 병설비용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통신용 건물의 장부가액은 건물마다 다르고, 또 실제로 병설의 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그 일부인 점에서 통신용 건물의 전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병설요금의 실제금액을 접속약관에 기재하는 것은 비용대 효과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나. 우정성은 1999 회계년도의 NTT 동일본과 NTT 서일본의 「상호 접속에 관한 협정 조항」을 승인함에 있어, 과거에는 NTT 동일본과 NTT 서일본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어떤 경쟁업체의 기기가 상호접속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상호접속이 불가능하였으나, NTT 동일본과 NTT 서일본의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하여 그들의 기기에 대해 병설 공간에 대한 접속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다. 우정성의 법령 초안에 따르면 NTT 동일본과 NTT 서일본은 병설을 위한 건축을 하도록 요청받는 경우 NTT 동일본과 NTT 서일본이 병설 요청에 응답하는 표준 기간과 병설에 이용 가능한 공간에 대한 정보 공개 절차를 그들의 요금표에 포함시키도록 요구 받을 것이다. 우정성은 2000년 5월, 그 수정에 대하여 전기통신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였다. 경쟁업체들이 병설 공간의 이용 가능성을 알아 보기 위해 NTT 동일본과 NTT 서일본의 건물 내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회에서 논의중에 있다.

#### 4. 선로부설권과 기존 업체의 설비에 대한 접속

일본 정부는 1999 회계년도 중에 케이블 가설 불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일본 정부는 선로부설권(right of way) 및 기존

업체의 설비에 대한 접속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8 회계년도에 제안한 조치 이외의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는 2000년 3월 27일 발표되었다.

2000년 9월 말까지, 일본 정부는 2000년 3월 27일에 발행된 「일본의 선로부설권 검토 결과」에서 관련 기관들에 의한 개선 조치 상황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2000년 10월에 외무성 웹사이트를 통하여 발표할 것이다(<http://www.mofa.go.jp/mofaj/gaiko/economy/husetsu/index.html>).

### III. 미국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

제3차 공동현황보고서에서 상호접속 문제와 관련하여 나타난 미국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주간접속요금 인하

2000년 5월 31일, FCC는 미국의 접속요금을 총 32억 달러 인하하도록 명령하였다. 새로운 접속요금체제에 참여하는 지역 벨 운용 통신사업자의 경우, 교환과 전송을 위한 접속요금은 분당 55센트로 인하하도록 조치되었다. 이 요율은 우정성의 LRIC 모형을 이용하여 개발된 Model B 요율의 약 절반 수준이다. 새로운 체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미국 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는 LRIC 연구를 착수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이는 2000년 7월 1일부터 소급 발효될 것이다.

#### ② FCC의 Hybrid Cost Proxy Model의 투명성

FCC는 Hybrid Cost Proxy Model을 비롯한 어떠한 LRIC 모형의 개발에 대해서도 논평할 수 있는 기회와 투명성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 ③ 국제 정산 요율 벤치마크

제1차 현황보고서를 제출할 때부터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하여 “국제 정산요금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진입조건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시장진입 장벽인 표준가격 규칙을 서둘러 철회해야 할 것”이라는 제

안을 하였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 현실을 고려하여 개발 도상국들이 경쟁적 세계 전기통신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④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국제과금 합의(ICAIS)

2000년 5월, APEC 통신장관 회의에서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ICAIS(International Charging Arrangements for Internet Services) 원칙을 지지하였다.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함께, “인터넷 접속성은 세계 정보 기반시설의 핵심 요소이다. 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들간의 인터넷 과금 합의는 민간협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배적인 사업자가 있거나 사실상의 독점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APEC이 국제 인터넷 서비스 과금 합의의 문제에 관하여 제안된 권고사항에 의견일치에 도달하도록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⑤ 상호접속 효율의 계산 방법 등에 대한 접근

미국 정부는 50개의 주공익사업위원회와 국립규제연구소(National Regulatory Research Institute: NRRRI)의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접속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일본 정부에 제공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상호접속 합의와 모형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IV. 일미 상호접속 협상결과가 NTT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NTT에서는 일미 상호접속 협상결과에 따라 NTT가 LRIC 모형을 도입하는 경우, NTT 동일본 및 NTT 서일본의 3개년 수지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LRIC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도입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할 때, 동서 NTT를 막론하고 경상이익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 현재,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NTT 서일본으로서는 경영상 심각한 결

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NTT 서일본은 LRIC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2002년에는 경상이익 흑자가 전망되지만, LRIC가 도입된다면 2002년에도 여전히 흑자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NTT 동일본 상호접속추진부의 당국자에 의하면 2002년까지 LRIC 도입 이전의 경상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수를 약 2만 명 감축시켜야 한다고 한다.

<표 6> LRIC 도입이 NTT 동일본·서일본의 3개년 수지전망에 미치는 영향 (단위: 억 엔)

	동일본			서일본		
	2000	2001	2002	2000	2001	2002
LRIC 방식 도입 전의 경상이익	440	820	1,090	-670	-180	220
LRIC 도입의 영향	-240	-430	-550	-250	-430	-520
도입 후의 경상이익	200	390	540	-920	-610	-300

<자료>: 東□□□□□□□□□□ □□□□□□□□, □□□□□□□□, 2000. 8., p. 8.

V. 시사점

미일 상호접속료 교섭의 발단은 미국사업자의 일본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호접속요금의 인하를 요구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미일 상호접속료 교섭과정을 통하여 미국은 공세, 일본은 수세의 입장을 취했지만 일본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일미 상호접속료 협상과 관련한 일본의 대응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이 1998년 5월에 발표한 「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일미간의 강화발의안에 관한 제1차 공동현황보고서」에서 2000년 말경에 새로운 접속료산정방식으로 장기증분원가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본의 통산성과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일본 국내 시장개방 및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추



진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을 간파하고, 미국의 요구에 대해 보편적 서비스 확보, 이용자요금 및 통신사업자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모형을 개발 적용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실제 일본의 대응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일본에서 교환설비로 분류되어 있는 RT를 가입자측 설비에 포함시킴으로써 접속료에서 RT 비용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일본측에서는 이 경우 기본요금이 월 300엔 정도 인상되어 국민들의 저항을 초래할 것이므로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일본측의 주장이 주효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에서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협상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통계자료를 왜곡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에 대하여 접속료 인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일본은 재빨리 사실의 진위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는 주간접속요금과 시내상호접속요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주간요금접속료보다 훨씬 낮은 시내상호접속요금을 일본의 상호접속요금과 비교함으로써 일본의 상호접속요금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미국의 접속료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간요금접속료와 자국의 접속요금수준을 비교해야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당초 접속료 교섭에서 미국의 접속료 인하요구를 완화시켰다.

셋째, 시장경쟁원리의 효율성을 신봉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고정망 부문에서 장기증분원가모형을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참고로 주요 선진국의 LRIC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특히 일본이 2000년 말에는 이를 시행하게 될 것이므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조만간 이의 도입을 요구해 올 것으로 보인다. 고정망에 대한 장기증분원가 모형 도입에 대해서는 지배적 통신사업자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기타 사업자들은 찬성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은 자사의 이익만을

<표 7> 주요 선진국의 LRIC 도입 현황

	대상	적용 영역	비고
미국	기존시내전화회사	시내전화회사 상호간의 접속요금 등	주간요금에는 아직 미채용
영국	BT	BT와의 접속요금 (1997. 10 ~)	Bottom-up과 Top-down의 혼합형
프랑스	FT	지배적사업자(접유율 25% 이상) 접속요금	2001년 도입 예정
독일	DT	지배적사업자(접유율 25% 이상) 접속요금	모델 개발중 (2000년 이후 도입)

<자료>: 東□□□□□□□□□□ □□□□□□□□, □□□□의動向, 2000. 8., p. 5.

위하여 비생산적인 찬반 논리 싸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한국 대 선진 외국” 시장구도를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하여 선진국의 요구에 체계적,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동전화가입자 수가 유선전화가입자 수를 오히려 능가하고 있으며, 매출액 규모에 있어서도 2~3배 높은 수준이어서 국민들의 정보경제 활동에 미치는 중요도가 매우 커졌다. 2000년 6월 현재, 시내전화가입자 수는 2,200여만 명이며, 셀룰러 이동전화와 PCS만을 포함한 이동전화가입자 수는 2,400여만 명에 이르고 있다[12]. 기술변화의 속도가 빨라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이동망에 대한 LRIC 모형 도입도 신중히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다섯째,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LRIC 방식의 도입을 요구하기 전에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가수준에 훨씬 미달하고 있는 기본료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 이 문제는 정보통신부나 한국통신 등 정보통신 정책당국이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에서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기본료를 인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가입자회선비용은 기본료로 회수하고, 접속에 따른 비용은 접속료로 회수하는 것이 정보통신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고 시장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

